2024 아트코리아랩
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– 후속지원 〈후속제작 · 실험지원〉 공모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은 2023년 공간 인프라를 연계하여 예술인 맞춤형 기술역량 교육부터 예술실험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 **<수퍼 테스트베드 *Super Testbed*>**를 운영하였습니다. 2024년에는 예술기술 융합의 중장기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후속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

본 과정의 후속 지원으로 <2024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- '후속 제작실험 지원'> 공모를 진행합니다. 본 사업은 '23년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참여 프로젝트의 후속 실험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의 연속 작업을 지원하거나 참여자 간 새롭게 구성된 팀의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, 예술기술 실험과 제작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확장하고자 합니다. 참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[참조. 아트코리아랩 -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후속지원 개요]
(추진방향)
- **(국내·외 유통 판로 지원)** 융합예술 작품의 국내·외 유통 확장 및 견인
- **(후속실험 지원)** 프로토타입의 완작 또는 후속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여 작품 실험 고도화 지원, '23년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한 신규 우수 프로젝트 발굴
- **(기술역량 고도화 기회 제공)** '23년 연계 심화과정 개설 및 참여 지원

(주요사업(안))

유형		지원규모	주요 내용	지원대상	주요일정
1	**유통지원**	최대 5건 내외 (건별 최대 10백만원)	**프랑스 뉴이미지 페스티벌 참여** - **'24.4.24.(수)~4.28.(일)** 코리아 포커스 참여 - 페스티벌 참여 및 해외 유통 기회 제공 * XR작품 시연, 컨퍼런스, IR교육 및 피칭 기회 제공	'23년 융테베 참여자 대상	공모(2월) 참여(4월)
2	**후속제작·실험지원**	최대 2건 내외 (건별 최대 50백만원)	**'23년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참여자 중** ❶완작제작, ❷후속실험 등 프로젝트 후속 지원 * 참여자(팀) 간 공동 프로젝트 등으로 신청 가능	상동	공모(-3월) 사업운영(-11월)
3	**심화과정 참여**	2개 과정, 과정별 10명/팀 내외	'23년 연계 개설된 [심화과정] 실험지원 참여	'23년 참여자 가산점 부여	'24년 상반기 중 안내

□ 공모개요

○ **(공 모 명)** 2024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– 후속지원 <후속제작·실험지원>

○ **(공모목적)** 23년도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자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프로토타입의 완작 제작 또는 후속 실험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창제작 기반 마련,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

○ **(공모기간)** 공고일 ~ 2024. 3. 21.(목) 15:00까지

○ **(지원기간)** 2024. 4. ~ 11. (8개월)

○ **(지원대상)** **'23년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참여자 중** 후속 지원을 통한 실험, 제작 고도화가 가능한 **유형Ⓐ**기존 프로젝트 및 **유형Ⓑ**신규 프로젝트

* **유형Ⓐ 기존 프로젝트** : 23년 융합예술 테스트베드에서 실험, 제작했던 프로젝트의 **연속 작업**
* **유형Ⓑ 신규 프로젝트** :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하여 팀(2-3인)을 구성하여 **신규 프로젝트** 제안
* 반드시 하단의 표(주요내용)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할 것★

○ **(지원규모)** 2건 내외, 건별 최대 50백만원

*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혜 불가
* 기관 및 단체가 간이 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,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

○ **(지원조건 및 지원 세부내용)**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주요내용</th></tr>
<tr><td>공모접수 및 선정
(2월~3월)</td><td>
<지원대상>
· (지원자격) '23년도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참여자 40명(팀)으로 한정
· (지원조건) 후속 지원을 통해 실험, 제작 고도화가 가능한 [유형Ⓐ]기존 프로젝트 또는 [유형Ⓑ]신규 프로젝트
*'23년도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
- 참여자수 : 총 40명(팀) *4개 과정, 과정별 10인(팀)
* 2023년도 지원사업을 완료(정산확정 및 잔액반납)하지 못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
· [유형Ⓐ] 기존 프로젝트 후속 지원
- 23년도 진행 과정 시 실험, 제작했던 프로젝트의 후속(연속) 작업
- 기존 프로젝트과 후속 프로젝트의 연계성, 기술의 연계성 필수
- 23년 사업과 대표자 변동 불가(참여를 원할 경우 유형Ⓑ로 진행)
· [유형Ⓑ] 신규 프로젝트 제안
- 4개의 과정(랩) 내/간 교류(네트워킹)로 신규 팀 구성(최대 3인)
- 지원자 전원 23년 참여자로 구성, 실험 과정 및 목표성과 기술 필수
<table>
<tr><th>팀 구성(예시)</th><th>지원방식(택1) 및 제출자료</th></tr>
<tr><td>- 개인+개인</td><td>신규 팀(단체) 구성 필수
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 제출
*개인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단체로 발급</td></tr>
<tr><td>- 단체(사업자O)+개인(사업자X)
- 단체(사업자O)+개인(사업자X)+개인(사업자X)</td><td>1)신규 팀(단체) 구성,
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출
2)주관단체에 따른 참여인력 내 참여 가능,
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</td></tr>
<tr><td>- 단체(사업자O)+단체(사업자O)
- 단체(사업자O)+개인(사업자O)
- 단체(사업자O)+개인(사업자O)+개인(사업자O)</td><td>1)신규 팀(단체) 구성,
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출
2)주관단체 선정,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
[붙임6]프로젝트 공동 확약서 및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</td></tr>
</table>
*사업자O :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또는 단체
</td></tr>
<tr><td>후속
제작·실험지원
(4월~11월, 8개월)</td><td>
<지원항목>
· 직접경비 지원 : 실험(제작)지원금 지원 *2건 내외, 건별 최대 5,000만원 지원
· 인프라 지원 : 아트코리아랩 공간(미디어랩, 이머시브사운드스튜디오, 쇼룸 등) 및 장비를 지원하여 자유로운 실험과 안정적인 창작 환경 일부 제공 가능
*운영 상황에 따라 인프라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</td></tr>
</table>

	· **멘토링 지원 :** <24년도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지원> 연계 멘토링 지원 * 24년 <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지원> 사업 5월 중 공모 진행 예정
공유, 확산 (11월~12월)	**<프로젝트 목표설정(필수)>** · 프로젝트 성과물(작품)의 형태는 자유이며, 내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으나 프로젝트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(정성, 정량)와 이를 위한 계획 필수 **<공유·확산 계획 수립(필수)>** · **아트코리아랩 또는 외부공간에서 현장공유(필수, 연 1회 이상)** - 아트코리아랩 공간 혹은 외부 공간에서의 과정/성과 공유를 통해 유통 확대 - 공연, 전시, 렉처 등 형태는 무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 가능 · **아트코리아랩 과정공유회 참여 필수** - 24년 11월 중 5일(예정) / 아트코리아랩 - 그 외 센터요청에 따른 홍보, 아카이빙 등의 활동에도 적극적인 협력 필수 · **이외 적극적인 대외적 공유, 확산 등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 수립 필요**
유통 (2025년~)	· **프로젝트 특성, 내용 등에 따라 후속년도 대내외 유통 연계 지원 가능**

○ (지원시 유의사항)

- 지원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함
- '23년도 지원사업을 완료(정산확정 및 잔액반납)하지 못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
- **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, 지원금 할당은 불가하며 주관단체는 행정절차 수행 및 정산 등의 일체의 의무를 짊**
- **24년 아트코리아랩 융합예술 테스트베드 후속지원 <뉴이미지 페스티벌 참여> 공모 건과 중복 지원 불가**
-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되므로 사업의 선정-집행-정산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

<지원 제외 대상>

· 국비·지자체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
· 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*」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

※ 제13조 제4항
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2.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
·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
·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·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
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·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(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
*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

○ (선정자 의무사항)

-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및 목표 도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가능해야 함.
- 아트코리아랩 과정공유회(11월 중)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, 이외에도 아트코리아랩 공간 혹은 외부 공간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공유해야 함.
-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시,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CI, 아트코리아랩 BI 등 지원사업 관련 기관 표기 필수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의무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제출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  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  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
  * 실적보고서 및 성과물의 경우 추후 자료집, 아카이빙 등의 책자/영상/온라인 등에 제작 및 업로드(공개) 될 수 있음
- 이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필수, 정산·실적 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실험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, 지급, 집행하여 정산의 의무가 있으며 정산과정에 따라 지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

□ 신청 및 접수안내

○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4. 3. 21.(목) 15:00까지

* 접수 마감일(24.3.21.(목) 15:00)까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5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

○ (접수방법 및 제출서류)

- 접수방법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 (*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)
- 제출서류 *첨부파일은 한글(HWP)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

구분	제출서류			제출방법
1	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1부	-	필수	이나라도움 시스템에 **직접 작성**
2	지원신청서 1부(지정서식/한글파일)	표지 +서식1	필수	이나라도움 시스템에 **첨부** 제출
	프로젝트 계획서 1부(지정서식/한글파일)	서식2	필수	
	23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1부(지정서식/한글파일)	서식3	필수	
	[붙임 1, 2, 3, 4, 5] 서명본 각 1부	붙임	필수	
3	지원유형별 증빙서류 1부	-	필수	
4	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(포트폴리오 등)	-	선택	

*인터뷰 심의 대상자에 한해 발표자료(PPTX) 제출 안내 예정

○ (주의사항)

- 이나라도움 이용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-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(시스템 사용, 장애 신고 등)은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(1670-9595) 문의
-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사전제출 권장
- 예술가/단체가 간이 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,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
-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수혜 불가

□ 심사 및 선정

○ (심의방법) 외부전문가에 의한 1차 심의(서류) 및 2차 심의(발표)

구분	내용
행정검토	○ 신청서류 검토, 서류 미비 등 결격 지원서 제외
1차 서류심의	○ 심사내용 : 지원신청서 및 프로젝트 계획서 등 심사 ○ 심사방법 : 서면심사 ○ 심사위원 : 외부 전문가 3인 위촉 ○ 선정범위 : 최종 선정자의 3배수 내외 선정 * 접수결과 지원 규모의 4배수 미만일 경우, 서류심의를 겸한 발표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
2차 발표심의	○ 심사내용 : 사업계획서와 제출 자료 기반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○ 심사방법 : 인터뷰심사(15분 내외) *PT 자료 발표 ○ 심사위원 : 외부 전문가 3인 위촉
최종 결과발표	○ 최종 선정결과 발표 * 예비 2인을 선별하여,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 인원으로 충원함

○ (심의일정)

모집공고 및 접수	▶	행정검토	▶	1차 심의	▶	2차 심의	▶	결과공고
공고일 ~3.21.(목) 15:00까지		**3월 4주**		**3월 4주**		**4월 1주**		**4월 2주**
이나라 도움 접수		서류 미비, 신청자격 검토		서류심의 (3배수 선정)		**인터뷰심의** (15분 내외)		**최종선정** **결과공고**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심사기준

심사지표	배점	세부 심사 내용 (착안사항)
전년도 과업과의 연속성/연계성	10%	• 전년도 과정, 실험 수행과의 연관성, 연속성이 높은가 • 기존작품 혹은 실험 과정의 보완 계획이 적절한가
프로젝트 구체성, 차별성	40%	• 융합(예술, 기술 측면) 제작의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이 있는가 • 프로젝트가 예술기술 융합씬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
발전성 사업기대도	30%	• 프로젝트의 적절한 목표(정성, 정량)를 설정하였는가 • 후속지원, 실험지원 시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수준인가
수행역량	20%	•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• 사업계획과 인력 구성이 적절한가 • 예산의 규모 및 예산 집행계획이 구체적인가

* 동점자 발생 시, 배점이 높은 지표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

□ 결과발표

○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아트코리아랩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단체 개별 공지

□ 유의사항

○ (예산편성 단계)

- **(간이)과세사업자의 경우,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하며 부가세액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음**
  * 부가세액은 사업비 외 자부담액으로 집행하며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하지 않음
  * 고유번호증/면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액 보조사업비 편성/집행 가능
-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
<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>
-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-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(교육기기, 장비, 가구, 도서 구입 등), 시설 부대비, 수선비, 전화·인터넷 설비, 홈페이지 개발비, 도메인비 등
-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,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(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 19조 등)

○ (선정 단계)

-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(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) 및 이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신청 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금의 교부, 집행, 정산의 의무는 신청단체에 있음

○ (사업수행 단계)

-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, 집행, 정산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됨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금 집행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
-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은 불인정 될 수 있음
-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,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
-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- **사업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, 고의 혹은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**
-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해야 함
-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, 결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* ('21.1.6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  *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
ㅇ **(사업종료 후)**
- **회계검사 및 정산·실적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(센터 지정양식) 제출**
-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·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,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
※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문의

ㅇ **(공모 문의)**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(akl@gokams.or.kr, 02-2098-2964)
※ 전화 문의는 평일(월~금) 10:00~17:00 중 가능(점심시간 12:00-13:00)

ㅇ **(e나라도움 문의)**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